仲裁硏究, 第 19 卷 第 1 號
2009년 3월 2일 발행, pp. 25-44

논문접수일 2009. 2. 11
게재확정일 2009. 2. 23

기관중재와 임시중재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오 원 석*
Won-Suk Oh
김 용 일**
Yong-Il Kim

〈목 차〉

Ⅰ. 서 론
Ⅱ. 기관중재
Ⅲ. 임시중재
Ⅳ. 기관중재와 임시중재의 장·단점 비교
Ⅴ. 결 론

주제어 : 중재조항, 중재부탁계약, 기관중재, 임시중재, ICC 중재법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Ⅰ. 서 론

중재는 법원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역시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고, 당사자 간에 그 제3자가 내리는 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분쟁해결형태를 말한다. 중재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가 있다. 분쟁당사자는 자신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매 경우 어떤 종류의 중재가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시 관련기관, 중재지, 준거법 등이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적용될 법체계, 중재과정에 당사자의 통제범위 및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의 형태 가운데 기관중재(Institutional 또는 Administrated Arbitration)와 임시중재 (Ad Hoc 또는 Non-Administrated Arbitration)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관중재는 당사자의 분쟁을 중재기관의 주관 하에 해당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기구 및 각국에 많은 중재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각 기관의 활동과 목적에 따라 중재의 진행을 돕는다.

임시중재는 특정계약이나 분쟁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립된 중재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임시중재에 합의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중재절차, 중재인 선정 및 중재규칙 등을 결정한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에는 합의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임시중재에서는 중재운영기구는 없으면서도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지정하기도 하며,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 선정을 위해 중재기관을 지정하기도 한다.

기관중재의 경우 특정 중재기관이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데 반하여, 임시중재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르면서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또는 임시중재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중재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와 같이 양자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다

그동안 상사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뉴욕협약을 근거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다루었으며,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판정에 관한 내용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1].

1) 최혁준,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이상옥, "국제중재법규상의 중재인선정계약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중재권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4, 장복희,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정", 「계간중재」 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오원석,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 UNCITRAL모델법(제34조)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1권

이에, 논자는 본 논문에서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 중재조항의 작성이나 중재계약에서 참고가 되고자 기관중재와 임시중재의 특징과 장점들을 논급하고자 한다. 나아가 당사자가 기관중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의 표준조항과 일반적 기관중재조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당사자가 임시중재를 이용할 경우에 지정된 중재규칙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표준조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사자가 국제비즈니스계약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분쟁발생 후 중재부탁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Ⅱ. 기관중재

중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첫 번째 문제는 특정계약이나 분쟁에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흔히, 일방이 제안하고 상대방은 이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중재기관은 제안된 기관이 선정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중재기관이 특정지역이나 산업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경우 동 기관이 선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관선택은 계약과정에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다.[2)]

1. 기관중재의 특징

모든 중재기관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이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각 중재기관은 특별한 요건과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재판정부 구성에 필요한 중재인수와 중재인의 선정 절차 및 각 기관의 중재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3, 한국국제상학회, 2006. 김경배,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나타난 집행거부사유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4권 제1, 한국중재학회, 2004.

2) 국제상사중재의 대표적인 상설중재기관으로는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과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정확히는 미국중재협회가 국제상사중재의 처리를 위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치한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적으로 활발한 중재기관으로는 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원(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Institute: S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중재센터, 독일중재원(Germna Institution for Arbitration. 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 DIS),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이 있다. 해사중재에 관하여는 영국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LMAA)와 뉴욕해사중재인협회(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SMA)가 있다.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pp.17-18.

각 중재규칙마다 당사자의 권리,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정도, 중재절차에 대한 중재인의 통제권, 잠정조치(Interim Relief)에 대한 중재인의 명령권 및 중재비용 등의 규정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중재에서 해당기관의 관리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ICC 중재의 경우 쟁점정리사항(Terms of Reference), 판정을 내리는 시기 확정 및 판정문 검토 절차 등은 그 제도의 특징적 기반으로 간주하여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LCIA의 경우 기관의 관리는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및 중재인의 비용을 결정하고 추심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재하는데 그친다.[3]

만약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신청인이 중재합의 후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인 선정을 지연할 경우 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ICC 중재의 경우 "관련 당사자 일방이 정식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심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를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수 있다.[4]

2. 기관중재의 장점

(1) 중재규칙의 이용

기관중재의 중요한 이점의 하나는 당사자 자신들의 중재합의에 검증된 기관중재규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중재에서는 중재계약이나 국제계약의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을 명시하므로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임시중재에서는 UNCITRAL 중재규칙과 같은 임시중재를 위해 제정된 중재규칙을 명시하여야만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시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같은 기관중재규칙을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관중재칙은 기관의 개입을 전제로 제정되었고, 동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5] 임시중재가 특정계약관계, 즉 당사자가 계속적인 거래를 할 경우 적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관중재가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6]

(2) 중재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재기관은 행정적 지원업무 즉, 중재신청의 접수, 중재비용 및 중재인 수당 지급업무

3) Julian D M Lew QC & Loukas A Mistelis,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l, 2003, p.36.

4) ICC Arbitration Rules, Art.12(2).

5) P.D. Friedland, Arbitration Clauses for International Contract, JP Juris, 2000, p.24.

6) A. Redfern, & M.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4, pp.44-48.

처리, 중재진행 중 심리주선 및 중재판정문의 입증 등을 수행한다. 계약당사자가 국제상거래나 분쟁해결에 밝고, 사건수행에 협력하는 경우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 특히, 당사자가 국제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한 당사자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 양자 또는 일방이 동 기관의 행정서비스의 보호와 도움을 바랄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의 방해위험 감소

임시중재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많으므로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관중재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방해노력이 있더라도 중재기관의 개입으로 중재의 진행이 계속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기관중재가 임시중재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게 된 주요이유가 바로 전략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집행가능성

법원은 기관중재판정에 비해 임시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에 소극적임을 증명할 통계는 없으나 경험 있는 변호사들은 단지 중재인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확립된 기관의 후원 하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집행판결 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에 보다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7]

집행측면에서 기관중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특히 ICC에 해당되는데, ICC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발행 전 판정문의 완결성, ICC 규칙 준수 및 준거하는 국내법과의 모순여부 및 내부적 일관성을 위해 판정문을 검토한다.[8] ICC 판정문이 집행되도록 요구받은 법원은 중재판정부 뿐만 아니라 ICC 중재법원이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집행판결을 내린다.

둘째, 비록 중재기관이 판정문을 검토하지 않는다 해도 집행법원은 확립된 중재기관의 후원아래 판정이 내려졌음을 알면 이를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판정은 중재기관이 선정한 중재인이 검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이기 때문이다.

(5) 기관의 중재경험 이용

중재기관은 정교한 중재규칙과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중재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위안을 줄 수 있다. 비록 개별중재는 중재인단이 절차적 준거법과 실체적 준거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기관의 공신력과 경험은 당사자들에게 보다 큰 위안이 된다. 또한 당사자는 경험 있는 기관의 충고를 통하여 처리과정에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7) D. Freger,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Dispute Resolution Provis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A US Perspective", 15 *J. Int'l Arb,*. 1998, p.22.

8) ICC Arbitration Rules, Art.27.

3. 국제중재기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중재기관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사법에 의한 민간중재기관과 국제공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1) 민간중재기관[9]

1) ICC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C 중재법원은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국제중재기구이다. 1923년 설립 후 각종 상사분쟁을 취급하여 2007년에 취급한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ICC 중재규칙의 2가지 큰 특징은 쟁점정리사항과 ICC 중재법원의 판정문검토 조항이다.

2)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의 기원은 1892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이다. 런던중재회의소(London Chamber of Arbitration)로 알려져 있으며, 1980년에 재구성되어 매년 80건이 넘는 중재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LCIA는 1998년 개정 중재규칙을 사용하고 있으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정기관 및 중재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3)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는 소송이 아닌 중재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의 분쟁해결절차를 연구하고 촉진하며 관리하기 위해 1926년에 설립되었다. 근년에 중재가 다른 분쟁해결방법보다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자, AAA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게 되었다. 첫 센터는 1996년 뉴욕에서 그리고 유럽센터는 2001년 6월 아일랜드공화국 더블린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 ICDR)를 개원했다.

AAA는 자신의 국제중재규칙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2000)에 따라 중재를 관리하는 외에 미대륙간 상사분쟁위원회(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 IACAC)를 관리하고, 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에서 필요한 경우 IACAC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10]

---

9) E. Thomas, "Commercial Peace and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Crosshai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08, p.337; W. Stromber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Other Glob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Summer 2007, pp.1351-1352. 참조.

10) P.D. Friendland, op. cit., p.43.

4) WIPO 중재센타(WIPO Arbitration Center)

동 기구는 1994년 WIPO의 주관 하에 설립되었다. 1883년「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체결 후 정부간 기구로 역할을 해 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 센타는 조정과 중재에 관한 탁월한 규칙을 두고 있다. 동 센타는 중재인 명부를 두고 있으며, 목록을 당사자에게 보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동 기구가 중국에서 가장 큰 중재기구이다. CIETAC은 중국국제무역촉진회의(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의 주도하에 조직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 CCPIT는 중국과의 무역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중국 측 계약당사자의 경우 CIETAC을 중재기관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국내에서 이루어진다.

6) 홍콩국제중재센타(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 싱가폴 국제중재센타(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는 아시아 극동지역의 각종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독립된 중재지를 제공하고자 1980년 초 설립되었으며, 싱가폴 국제중재센타(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는 중국인과 유럽인에게 아시아의 중립적 중재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2)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

1) Permanent Court Arbitration(PCA)[11]

PCA는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1899년「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 의하여 창설된 정부간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의 수는 100개국이 넘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2월 21일에 1907년 개정협약에 가입하였다. 그 이후에 PCA는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국가나 국가기관, 정부 간 기구 및 민간기업 등의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다양한 분쟁(특히, 양자 또는 다자의 투자조약에 기초한 투자분쟁·상사분쟁 포함)의 해결에 있어 저명한 중재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한 PCA는 UNCITRAL 중재에서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11) http://www.pca-cpa.org/showpage. asp?pag_id=1061> 참조.

2) ICSID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IBRD의 주도하에 1965년 3월 18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국가와 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워싱턴협약))이 채택되어 1966년 10월 18일 발효되었다.

워싱턴협약은 ICSID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ICSID 중재의 준거법으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23일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5개국(143개국 체약)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12]

4. 기관중재 이용을 위한 중재조항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서면중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13]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한다. 중재조항의 작성에 따른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중재기구에서는 표준조항(Standard Clause)을 제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표준중재조항을 사용할 때 당사자들은 이것이 중재합의를 집행가능하고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의 표준조항

1) ICC 중재규칙

1998년부터 ICC 중재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추천하고 있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현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되어야 한다).

ICC 중재의 경우 중재지는 관련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법원이 정하며,

12) http://www.worldbank.org/icsid/ constate/c -states-en.htm 참조.

13) ICC Rules of Arbitration; Art 4(3) (d); LCIA Rules, Art 1.1;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1; UNCITRAL Arbitration Rules 1.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의 부속기구인 중재법원이 된다. 그리고 절차적 준거법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과 「내부규칙」(Internal Rules)이 있다. ICC 중재규칙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 수, 중재지, 사용언어 및 계약에 관한 실체적 준거법 등을 추가로 합의할 수 있다.

2) LCIA 중재규칙

1998년부터 발효된 LCIA 규칙은 아래와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추천하고 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LCIA의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된다. LCIA 규칙은 본 조항의 언급에 의해 내포된 것으로 간주된다)

LCIA규칙은 당사자간 계약이행과 관련된 직·간접적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계약종료와 관련된 분쟁까지 언급하므로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조항에 중재인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계약에 관한 실체적 준거법도 명기할 수 있는 4개 조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당사자간 이에 관해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3) AAA의 국제중재규칙

1997년에 발효된 AAA의 국제중재규칙은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본 계약으로부터 또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논쟁이나 청구는 AAA의 국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

위의 표준중재조항에 당사자는 중재인 수, 중재지 또는 중재언어를 합의할 수 있다.[15]

14) 1)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2)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three)"
3)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4)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15) 1)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or three)" ;

AAA 중재에서는 다른 국제중재기구와 달리 당사자들은 여러 개의 중재규칙 즉, "국제중재규칙"(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상사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 "건축산업중재규칙"(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Rules), "기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은 다른 중재규칙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일반적 기관중재조항

특정의 국제중재기관이 아닌 일반목적의 기관중재조항으로 다음 조항이 사용될 수 있다.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designated set of institutional)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계약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지정된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동 기관의 중재규칙은 언급에 의하여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기관중재조항은 LCIA 표준중재조항과 거의 같다. 이러한 중재조항은 계약서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명기되거나 "Arbitration and Government"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항으로 명기할 수 있다.[16]

Ⅲ. 임시중재

1. 임시중재의 특징

임시중재의 기본적 특징은 그것이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 계약에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 외에는 약정된 중재제도가 없다. 당사자가 중재합의만 하고 중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임시중재가 된

2)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 state)" ; or

3) "The language(s) of the arbitration shall be....."

16)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breach there 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가끔 중재절차, 중재인 선정 및 절차규정에 관하여 합의하기도 한다. 만약 당사자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서 중재지만 합의한 경우 중재지의 법이 적용될 것이다.[17]

모든 기관중재가 각각의 특징과 중재절차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임시중재의 경우 이들에 관한 확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임시중재에서는 각자가 중재지의 강행법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중재절차를 합의하고 특정할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18] 즉 여기에는 중재인의 선정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절차, 증거제시약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은 중재진행을 위한 일정표 및 분쟁사건에 관한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합의할 수 있다.

2. 임시중재의 규제방법

임시중재를 규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중재합의시 적절한 중재규칙을 명시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중재규칙에는 중재절차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 UNCITRAL 중재규칙이다. UNCITRAL 중재규칙은 처음에는 임시중재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지금은 기관중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임시중재에서 기관이 개입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종종 당사자가 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선정 및 지명할 책임을 지는 선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몇 몇 주요 중재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

적용할 규칙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선정된 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규율하는 법인 중재지법(lex arbitri)을 유의할 것이다.[21] 특히 중재과정을 인정하여 중재인이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승인해 주는지 여부이다. 당사자가 구체적인 절차나 규율할 규칙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은 항상 남아 있다.

17) Julian D M Lew et al, op. cit., p.32.

18) UNCITRAL Model Law, Art. 9.

19) Andrew P. Tuck, "Investor-State Arbitration Revised: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visions and Proposed Reforms to The ICSID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Fall 2007." p.889, p.911.

20)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나 LCIA가 대표적이다.

21) UNCITRAL 모델법 제19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임시중재의 장점

임시중재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선호되는 형태이다. 당사자가 특정의 중재기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일방의 당사자가 특정의 중재기관을 선택하는데 반대하는 경우 임시중재가 타협안이 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는 임시중재가 특정사건에 더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특정기관의 관리나 통제에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절차나 메커니즘의 통제를 원할 경우 임시중재를 선호한다.

임시중재를 원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한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국영기업인 경우이다.[22] 이들 당사자의 경우 특정기관의 권한에 따르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손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전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전적으로 독립적인 임시중재를 선호하므로 불공정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므로 최대한 국가적 편견을 없애고 자국의 주권손상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임시중재는 국가당사자가 포함된 경우 외에 분쟁금액이 크거나, 공공정책이나 주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는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절차를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3]

4. 임시중재 이용을 위한 중재조항

(1) 지정된 중재규칙 하의 표준조항

당사자가 임시중재를 선택할 경우, 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표준조항이 있다. 즉, 임시중재를 위한 UNCITRAL이 제정한 표준조항이 바로 그것으로 여기에는 UNCITRAL 중재규칙을 언급하여 지정하고 있다. UNCITRAL 표준중재조항은 ICC 모델조항과 유사하다. UNCITRAL에서 추천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s present in force."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의 관계에서 또는 본 계약의 위반, 종료, 무효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권은 현재 발효 중인 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

22) A. Redfern, "The Arbit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Kuwait and Aminoil" (1985) *B.Y.I.L.*, p.65.
23) Toope, Mixed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tius, 1990, pp.212-217.

이 조항에 추가하여 아래 사항도 합의하여 명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즉, 중재인 선정기관, 중재지, 판정부 구성 및 중재언어이다.[24]

UNCITRAL 표준조항은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의 "위반, 종료 또는 유효성"에 관한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 중재규칙 미 지정에 관한 추천조항

만약 당사자들이 임시중재에 적용할 중재규칙을 중재조항에 삽입하지 않고 임시중재를 선택한 경우 중재진행에 관한 표준형식이 없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중재조항 초안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고 어떤 절차적 함정, 즉 판정부내의 공백 및 중재인간 합의 부재와 같은 경우가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함정은 결국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를 이탈할 수도 있도록 한다. 순수한 임시중재에서는 다음 조항이 우선 사용될 수 있다.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or"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논쟁 또는 청구권은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선정방법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중재규칙이 지정되지 않은 임시중재에서 중재인 선정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There shall be three arbitrators, appointed as follows; (a) each party shall appoint an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ed a third arbitrator who shall act as chair of the tribunal.[25]

(b) if either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within 30days of receipt of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by other party, such arbitrator shall at the request of that party be appointed by(the appointing authority).[26]

(c) if the two arbitrators to be appointed by the parties fail to agree upon a third arbitrator within 3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he third arbitrator[who shall no be of the same nationality as either of the two arbitrator or of the

---

24) 1) "The appointment authority shall be....."
2)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state)"
3)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one or three) arbitrator"
4)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25) 각자가 1인씩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26) 만약 일방이 상대방의 중재인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선정 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parties] shall be appointed at the written request of either party by (the appointing authority).[27]

(d) any challenge of an arbitrator for lack of independence or other --- shall be decided by (the appointing authority).[28]

(e) if a vacancy aries because any arbitrator dies, resigns, refuses to act, become incapable of performing his or her ---, or is removed upon a challenge, the vacancy shall be failed by the method by which that arbitrator was originally appointed.[29]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during the arbitration shall be agreed to by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by the tribunal.[30]

Default by any party shall not prevent the arbitrators from proceeding to under an award.[31] The tribunal may make its decisions by a majority. In the event that no majority in possible, the chairman may make the decision(s) as if acting as a sole arbitrator.[32]

위의 합의 외에도 중재조항은 준거법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두어야 한다.

Ⅳ. 기관중재와 임시중재의 장·단점 비교

1. 기 확립된 중재규칙의 유무

기관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기 확립된 기관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선택하므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중재합의시 검증된 중재규칙을 수용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임시중재에서는 기관선정에 따른 중재규칙이 없으므로 UNCITRAL 중재규칙과 같은 임시중재를 위한 규칙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나 중재규칙을 합의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중재합의에 중요한 중재요소를 빠뜨려 중재진행과정에서 절차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27) 당사자가 선정한 2인의 중재인이 30일 이내에 제3의 의장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기 선정된 2인의 중재인과 양 당사자와 국적이 다른 자로서 양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선정기관에 의해 선정된다.

28) 독립성 결여에 대한 한 중재인의 이의제기 또는 기타의 이의제기는 선정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29) 만약 중재인의 사망, 사임, 행위거절, 자신의 의무 이행불능 또는 이의제기로 인한 해임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그러한 공백은 중재인이 처음 지명되었던 방법에 따라 선정된다.

30) 중재진행절차는 당사자가 합의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판정부가 결정한다.

31) 한 당사자에 의한 태만은 중재인들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2) 판정부가 다수결의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수결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의장중재인은 마치 단독중재인의 경우처럼 판정할 수 있다.

2. 중재기관의 서비스 이용 유무

기관중재의 큰 장점은 기관의 행정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당사자가 국제거래나 분쟁해결에 익숙하여 문제 발생시 서로 협조하는 경우, 기관이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들이 국제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양방이 동 기관의 행정서비스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다. 특히, 강제집행이 요구될 때 뉴욕협약에서 요구하는 판정문을 취득할 경우 기관중재가 그 요건을 갖추는데 더 적절하다.

결국 임시중재가 특정 계약관계, 즉 당사자 간 계속하여 거래를 이행할 경우에 적절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관중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33]

3. 유연성

임시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연성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기관중재 진행에서 당사자들은 해당기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진행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갖기 때문이다.[34]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는 학자도 있다. 즉, 임시중재의 최고의 장점을 유연성에 두고, 석유채굴권계약(Oil Concession Agreement)에 따른 중재와 같이 국가를 포함한 많은 중재를 임시중재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임시중재가 제공하는 유연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5]

논자의 견해는 임시중재의 유연성이 기관중재에 비하여 큰 것은 사실이나 특정계약이나 특정거래의 성격에서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일반거래에서는 기관중재를 통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유연성"에 관한 점에 양자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 중재진행의 방해여부

임시중재의 가장 큰 단점의 하나는 중재인이 선정되기 전이나 또는 후에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피신청인이 중재의 진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임시중재에서 피신청인이 교묘하게 중재진행을 지연시키고자 의도한다면 계속적인 절차적 반대를 유발할 수

33) A. Redfern, & M. Hunter, op. cit, pp.44-48; W. L. Craig et 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2nd., 1990, pp.50-55.
34) Paul. D. Friedland, op. cit., p.25
35) A. Redfern, & M. Hunter, op. cit, pp.47-48.

있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이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 선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은 중재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재진행을 저지하려는 전략이 기관중재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중재의 경우 한 당사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기관이 개입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의 방해를 막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계약을 통하여 확립하고자 할 때 임시중재보다 기관중재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물론 이러한 방해위험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주로 당사자 간 정규적인 계약거래를 하기 때문에 각자 당사자 간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작동하도록 하기위해 상대방도 노력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5. 집행가능성의 차이

기관중재판정과 임시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가능성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해당 기관이 검토하여 쟁점사항이 잘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이 형식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중재판정은 다듬어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법원이 집행판결을 내리는데 부담을 덜 갖게 된다. 즉 법원은 중재판정부와 함께 중재기관의 명성과 역사를 신뢰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임시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실질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기관중재에서는 이러한 하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으나 임시중재에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는 양 판정의 집행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6. 비용

임시중재가 갖는 대표적인 장점의 하나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상사사건의 경우 관리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인 비용에 비하여 큰 의미는 없다.[36] 따라서 관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관중재를 선

36) ICC Administrative Expenses

Sum in dispute(in US Dollars)	Administrative Expenses(in US Dollars)
up to 50 000	2 500
from 50 001 to 100 100	2 500 +3.50% of amt. over 50 000
from 100 001 to 500 000	4 250 +1.70% of amt. over 100 000
from 500 001 to 1 000 000	11 050 +1.15% of amt. over 500 000
from 1 000 001 to 2 000 000	16 800 +0.70% of amt. over 1 000 000
from 2 000 001 to 5 000 000	23 800 +0.30% of amt. over 2 000 000

택하지 않고 임시중재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간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재인 비용에 관한 잠재적 차이이다. 임시중재의 경우 종종 시간당 비용개념에 익숙한 중재인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시간당 또는 1인당 비율로 비용을 징구한다.

이와는 달리 ICC의 경우 분쟁금액 및 사건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중재인 비용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비용은 시간당 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37] 마찬가지로 LCIA의 경우도 중재인의 통상적 요율보다 훨씬 낮은 요율표를 제시하고 있다.[38] 결국 요율이 낮아서 절약되는 중재인 수당이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시중재에서 절약되는 비용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임시중재가 중재비용 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비용과 관련하여 임시중재가 갖는 중요한 단점의 하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다루는 중재인과 중재비용문제를 협상하는 어색한 과정에 참여할 의무이다.[39]

V. 결 론

국제비즈니스계약 작성시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분쟁해결을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재합의 후에 바로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은 앞에서 논급하였으나 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중재를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중재의 진행과 중재서비스의 활용에 있는데, 이는 해당기관의 정비된 중재규칙과 절차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중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인 선정과정에서 임시중재는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중재에서는 해당기관의 중재규칙이 일방의 태만이나 고의적 지연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즉 피신청인의 의도적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셋째,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관중재의 경우 판정부의 판정문을 해당기관이 검토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므로 법원에서 신뢰감이나 권위를 인정받아 집행판결이 용이 할 수 있다.

from 5 000 001 to 10 000 000	32 800	+0.20% of amt. over 5 000 000
from 10 000 001 to 50 000 000	42 800	+0.07% of amt. over 10 000 000
from 50 000 001 to 80 000 000	70 800	+0.06% of amt. over 50 000 000
from 80 000 000 to 100 000 000	88 800	
over 100 000 000	88 800	

37) W. L. Craig et al, op. cit., pp.37-41.

38) LCIA Rules, Art 5; LCIA Schedule of Fees and Costs.

39) ICC Rules of Arbitration, App. III, Art.2.4; LCIA Schedule of Fees and Costs, Art.4(a);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32.

넷째, 중재비용 면에서 임시중재가 기관중재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록 기관의 관리비용이 절약된다고 해도 통상 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시중재비용이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관중재는 비용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 예상 가능한 반면, 임시중재는 그렇지 못한 단점이 있다.

다섯째, 임시중재의 가장 큰 장점이 유연성이지만 기관중재의 경우도 당사자의 합의로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나 한 당사자가 국가기관이어서 기관중재에서 국가의 주권이나 권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특수거래에서 임시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양당사자는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조항 작성시 중재인 선정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므로 중재진행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준거법의 결정", 「무역상무연구」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_____,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시 고려사항"(ICC, LCIA 및 AAA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_____, "ICSID 중재이용을 위한 투자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의 유효성과 추가쟁점",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Freger, 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Dispute Resolution Provis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A US Perspective", 15 J. *Int'l Arb.*, 1998.

Friendland, P.D., Arbitration Clause for International Contracts, Juris ublication, Inc., 2000.

Lew Q C, Julian D.M. et al,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Redfern, A., et al.,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Sweet & Maxwell, 2004.

Redfern, A., "The Arbit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Kuwait and Aminoil" *B.Y.I.L.*.1985.

Stromberg, W.,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Other Glob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Summer 2007.

Thomas, E., "Commercial Peace and Political Competition in the Crosshai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Spring 2008.

Tuck, Andrew P. "Investor-State Arbitration Revised: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visions and Proposed Reforms to The ICSID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Fall 2007.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2000).

ICC Rules of Arbitration (1998).

LCIA Arbitration Rules (1998).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9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Won-Suk Oh
Yong-Il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The court prefers the institutional award in the enforcement rather than the award issued under the name of arbitrators alone. For example,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scrutinizes awards for completeness, adherence to the ICC Rules and internal consistency, which since the court assurance for enforcement.

In terms of arbitration costs, for which the ad hoc arbitration is considere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may not be more expensive than ad hoc arbitration, as in most commercial case, the administrative fees are insignificant.

This paper suggests the standard or model arbitration clauses in institutional and ad hoc arbitrations. These Clauses contains the minimum elements necessary to re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nforceable and effective. So both parties may add the specific contents such as the number of arbitrator,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Especially, in Ad Hoc Arbitration without designated set of rules, more clean clause for appointing arbitrators will be needed.

Key Words : Arbitration Clause, Submission to Arbitration Agreement, Institutional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ICC Court of Arbitration.